2006. 6. 23

식품안전정책 동향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
(02-2194-7453, shinilgi@khidi.or.kr)

출처: 2004 보건산업백서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안전정책의 동향

○ 제외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광우병(BSE), 병원성대장균 0157:H7 및 다이옥신(Dioxin) 사건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생산자중심(생산부서)의 관리체계에서 소비자중심(보건부서)의 관리체계로 그리고 일반부서에서 전문기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조직 부서는 (표 Ⅳ-48)과 같다.
- 미국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을 대별하면 보건복지부(HHS), 식품약품청(FDA)과 농림부(DA), 식품안전검사청(FSI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1997년 식품안전종합대책(National Food Safety Initiative)을 발표하고 1998년 대통령식품안전위원회 등에서 업무통합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 영국의 경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DH) 및 농수산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 MAFF)로 분리되었으나 광우병, 식중독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를 계기로 소비자 중심의 식품행정 수행을 위하여 제임스 교수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2000. 4 특별행정기관인 식품규격청(FSA : Food Standard Agency)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Ⅳ-48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조직

구 분	생산자 중심	소비자 중심	비고
	농림부	보건부서	
미 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복지부, 식약청(FDA)	농업<보건
영 국		보건부(DH), 식품규격청(FSA)	농업≪보건
아일랜드		보건부(DH), 식품안전청(FSA)	농업≪보건
캐나다	농업부, 식품검사청(FIA)	보건부(DH), 식품검사청(FIA)	농업<보건
덴마크	식품농수산부(MFAF)		농업>보건
한 국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복지부, 식약청	농업≫보건

- 아일랜드는 보건부 및 농업식품부, 수산부 등 6개 부처로 분산되었으나 주변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식품 안전사고 및 소비자 불안행정으로 인하여 1998 추진반을 구성하고 1999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1999. 1 식품안전청(Food Safety Authority)을 설립하였으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사실상 식품안전청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 캐나다는 농업농산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보건부(Health Canada) 등 3개 부처로 나뉘어 관리하였으나 감시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측면에서 1997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식품검사청(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으로 통합하였다. 식품검사청에서는 농업부 장관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하나 보건부는 식품검사청의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련 기준·규격의 설정권한도 가지고 있다.
- 다음으로 덴마크의 경우는 농업국가로서 보건부, 농림부 및 수산부에서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중복(overlap) 및 공백(gap), 업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1997 식품농수산부로 완전히 통합하였다.

○ 국내의 동향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표 Ⅳ-49)와 같이 다원화된 식품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행정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 6월에 발생한 불량만두소 사건을 계기로 통합된 식품위생 관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 지향적 욕구 증가에 따라 생산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소비자 안전 중심의 관리체계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한 관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49 식품관련법에 따른 소관부처 및 대상식품

소관법률	소관부처	대상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등	농림부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농산물(재배단계)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먹는물
주세법	국세청	주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검사법	해양수산부	수산물
염관리법	산업자원부	소금
학교급식법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보건복지부(식약청)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상기제반법률	각 시·도(시·군·구)	상기대상식품에 대한 대부분의 집행업부

자료: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 2004

○ 식품안전관리 과학화·효율화

(1) 사전관리 기능의 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CNN, Reuter의 뉴스 등 국외의 정보전달매체를 통한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위해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필요시 신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확대 적용을 규정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사후관리 기능의 강화

가.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 우리나라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는 (표 Ⅳ-50)에서와 같이 총 검사건수 111,285건중 1,360건이 부적합되어 1.2%의 부적합률을 기록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검사 대상 식품중 부적합이 비교적 높은 식품은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그리고 식용유지류 순이었으며, 부적합비율이 높은 검사항목은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았으며, 식용유지의 경우는 산가, 요오드가 등 산패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 또한 부정·불량식품 생산·유통 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보에 의한 기획·기동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식약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인력·예산 등 국가자원을 투입한 거점감시망(surveillance network)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표 Ⅳ-50 유통식품의 수거 · 검사결과

식품별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
	검사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계	111,285	109,925	1,360	1.2	
건강보조식품	259	244	15	5.8	○펜플루라민, 폴리에틸렌글리콜베르베린 등
인삼제품류	719	699	20	2.78	○요힘빈, 구연산실데나필, GMO, 소르빈산 등
식용유지	2,059	2011	48	2.3	○산가, 요오드가, 비중 등
과자류	11,630	11431	199	1.7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산가, 과산화물가 등
특수영양식품	843	830	13	1.5	○카바카바, 구연산실데나필, 대장균군 등
농산물	28,153	27,759	394	1.4	○다이아지논, 클로로피리포스, 카벤다짐, 알드린 등
조미식품	6,729	6,652	77	1.1	
주 류	695	688	7	1	○카페인, 진균수, 삭카린나트륨, 총산 등
수산물	6,543	6,475	68	1	
김치 · 절임식품	3,045	3,016	29	0.9	○식용색소황색4호, 아미노산질소, 보존료 등
어육제품	1,427	1,418	9	0.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나. 허위·과대광고의 관리

- 홈 쇼핑,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식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매우 높아 식약청에서는 internet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자동검색 program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 식중독의 관리

- 우리나라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은 (표 Ⅳ-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02년 world cup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관리로 다른 해에 비해 현저하게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3년에는 식중독발생이 전년도 대비 발생건수 및 환자수에 있어서 급증하였다. 앞으로 식중독의 발생은 학교급식의 증가, 외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51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연도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 수(건)	81	94	119	174	104	93	78	135
환자수(명)	2,797	2.942	4,577	7,764	7,269	6,406	2,980	7,909
환자수/건(명)	34.5	31.3	38.5	44.6	69.8	68.9	38.2	58.6

라. 수입식품의 관리

- 수입식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가속화, 부족한 원재료의 수입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수입식품의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표 Ⅳ-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식품검사결과의 부적합율은 년 평균 0.4~0.6%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정밀검사 보다는 모니터링 또는 무작위 검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종 다양한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외 주재관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Ⅳ-52 연도별 수입식품 수입검사현황

년도	계	적합	%	부적합	%
1999년	108,280	107,651	99.4	629	0.6
2000년	133,761	132,967	99.4	794	0.6
2001년	147,742	146,683	99.4	879	0.6
2002년	166,723	165,997	99.6	726	0.4
2003년	185,299	184,297	99.5	1,002	0.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 또한 검사종류별 부적합 비율에서 서류검사의 부적합율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관능검사 또는 정밀검사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능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뉴얼의 작성, 관능검사 평가를 위한 적·부 판정 도감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 Ⅳ-53 검사종류별 부적합 비율(2003년)

검사종류별	계	적합	%	부적합	%
계	185,299	184,297	99.5	1,002	0.5
서류검사	139,487	139,429	100.0	58	0.0
관능검사	13,371	13,318	99.6	53	0.4
정밀검사	29,197	29,389	97.2	608	2.8
무작위검사	3,244	3,161	97.4	83	2.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